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급수 445-46	(전화번호 323)	전결이정	- 조 -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경 0184
시행일자	85. 1.		2, 3	
보존연한				
보조기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상하수국장	건설관리국장	업무국장	업무국장
	급수과장	민방위국장	배수국장	건축지도국장
기안책임자	조광치 85. 1.		조	누수방지국장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 신	봉 제
제 목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제안)	85. 2. 4			
수신 :	내부결재 여규제 449			
제목 :	같은 건			
1. 감사 142-857 (84. 11. 13) 및 감사 142-2 (85. 1. 4) 호와 관련입니다.				
2.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담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비상저수조 설치 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별첨과 같이 급수 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 시행 코저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3.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4.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개정요령 공고안 1부				
5.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 감사담당관 - 87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결과 통보

1. 감사 142-857 (84. 11. 13) 및 감사 142-2 (85. 1. 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감사시 지적처분 요구된 아래사항에 대하여 벌점과

같이 개선 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합리적 조정

나. 금수공사 정액공사비의 합리적 조정 고시

첨부 :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안 1부

2.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1985. 2. 04
(제3안)

수신 : 공보관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금수공사의 정액공사비를 조정하고 금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하였기 벌점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안 1부

2. 금수공사 사무취급요령 개정요령 고시안 1부. 끝.

(제4안)

1985. 2. 04

수신 : 건축담당관 - 86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1.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별첨과 같이 완화 조정 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 이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부서와 기타 유관기관 (주택행정과, 주택기획과, 재개발과, 구청 건축과, 구청 주택과, 주택공사, 건축사협회등)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첨부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제5안)

수신 : 수신처참조

참조 : 수도공사와장

제목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1.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담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별첨과 같이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이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안은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첨부 : 1.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안 1부

2.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수신처 : 서구1-17.

1985. 1.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적수조 설치기준 조정
=====



상 화 수 국

1960

요 지

0. 시장지시사항 (84. 12. 상수도 급수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공사비 과다로 급수신청기피
(조사대상 미급수 162가구의 38.3%)
- 영세민 급수공사 비용부담 경감 방안 강구

0. 감사원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수반하지 않는 비포장도로 지역도 정액 공사비에 포함된 도로복구비 부담사례 개선 시정
(변두리, 고지대등 영세민 거주지역 거의 비포장도로)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

0. 개선내용

- 정액공사비 재조정고시 (포장도로 굴착복구 여부 구분)
- 기존수전의 구경확대 공사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일반주택)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 조정

1. 관련근거

0. 급수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0. 정액공사비 조정고시

- 세대당 또는 건축단위 면적당 일정한 금액

0. 정액공사비 산출방법

- 계획 급수지역내의 간선배관 및 수요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수수료 등의 합계액

2. 현행 정액공사비

0. 고시 (제290호 (81. 8. 10)
제112호 (83. 2. 25))

0. 정액공사비 (고시금액)

- 연건축면적 165㎡ 미만 : 290,000원
- 연건축면적 165㎡이상 : 1㎡당 1,800원

0. 정액공사비 산출기초

구분	산출금액	비고
계	290,000원	1979년도에 시행된 급수공사의 실제 소요공사비를 근거로 전문원가 조사기관인 산경회계법인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 금액임.
간선공사비	72,764 "	
전용급수장치비	143,856 "	
도로복구비	62,860 "	
일반행정관리비, 기타	10,520 "	

* 165㎡ 이상건물 : 290,000원은 165㎡는 1,800원/㎡

3. 본 제 점

- 0. 포장도로의 굴착복구 여부에 불구하고 정액공사비 부과
- 0.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포장도로 지역도 정액공사비에 포함된 도로복구비 부담하는 불합리 요인 발생
- 0. 변두리, 고지대 등 영세민의 공사비 부담과중으로 급수신청 기피
- 0. 기존수전을 설치 급수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외 용도와 규모에 맞는 급수관 및 양수기의 구경확대공사시 정액공사비 이중부담 사례 발생
- 0. 감사원 감사시 지적 합리적 개선 요구

4. 개선대책

가. 정액공사비 재조정 고시

- 0. 급수공사시 포장도로의 굴착복구를 수반하는 지역과 수반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별하여 정액공사비 구분 조정

0. 조정정액 공사비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 지역	비포장도로 지역
연건축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00원
" 165㎡ 이상	7㎡당 7,800원	7㎡당 7,400원

나. 기존수전의 구경 확대공사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부과

0. 기존수도전을 설치 급수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의 사유로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급수관 (양수기포함) 구경 확대공사시 기존건물 면적을 공제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0. 증가대상 건축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의 급수관 (양수기포함) 구경 확대공사시는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 산정부과
0.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 개정

제3장 제7항 바호

= 정액공사비 산출 기초 (재조정내역)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포장도로지역	비포장도로지역	
계	290,000원	227,200원	
간선공사비	72,800	72,800	
전용급수장치비	143,900	143,900	
도로복구비	62,800	-	
일반행정관리비, 기탁	10,500	10,500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1. 관련 근거

- 0. 시장 지시사항 제46호 (78. 5. 8)
 - 비상용 수도물 점정량 확보방안 검토하여 건축행정에 반영
- 0. 시장방침 제7496호 (78. 5. 17) 및 제0664호 (83. 3. 18)
 - 신규 건축허가시 비상용 저수조 설치 의무화
 - 기존주택은 저수조 설치 권장

2. 현행 일반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

- 0. 건평 85㎡ 미만 : 1.0㎥ 이상
- 0. 건평 85㎡ 이상 : 건평 1㎡ 당 15ℓ 이상

3. 문제점

- 0. 저수조 설치기준 용량 과다로 민원야기
- 0. 건축주의 비용부담 과중으로 저수조 설치 기피
(미설치 또는 시설미비, 용량 부족등)
- 0. 소규모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의 관리상태 및 시설미비로 미활용
탄핵사태 발생
- 0. 감사원 감사서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민원이 없도록 대책마련
 - 일정규모 미만의 주택은 저수조 설치대상에서 제외
 - 저수조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금수공사 승인등

4. 개선 대책

가. 일반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구 분 시 설 비 규 모	저수조 설치용량			
	현행	완화조정안		
		1안	2안	3안
건평85㎡미만	1.0㎥이상	0.5㎥이상	권장	현행 용량으로 계속 시행하되
건평85㎡이상	건평1㎡당 15ℓ 이상	건평1㎡당 15ℓ 이상	건평1㎡당 15ℓ 이상	정호도는 지하수 개발시 권장

* 1안 — 저수조 용량을 축소 조정

2안 — 건축면적 협소한 소규모주택 저수조 설치권장

3안 — 단전, 단수등 비상시 용수 확보 대비

0. 적안 채택

0. 신규 건축허가시 반영

- 기존 건물은 저수조 설치권장

0.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 개정 (제4장 제5항 나호)

나. 개별 난방식등 소규모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 설치 적양

0. 옥상 또는 옥상보다 높은 위치에 저수조 설치 활용

- 자연유하로 각 세대애 상시 급수

0. 민영주택 건설사업 입지심의 또는 건축심의시 반영

* 급수 445-126 (84. 4. 14)호로 지침 마련 각구 애기허시달

별무 5119
1
1115 1115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개정 요령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항 바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수도전의 개량, 수선, 철거등의 공사

다만, 기존 건물면적을 제외한 증축 연면적이 165㎡ 이상인 건물의

급수관 (양수기포함) 구경확대공사는 증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공사비를 산정 부과한다.

제4장 제5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상용 저수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0. 주택 (85㎡ 미만) : "1㎡ 이상"을 "

(85㎡ 이상 : "1㎡ 당 15ℓ"을 "

"로)
"로)

부
부
이 요령은 1985. 2.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185 5.11.28
 HAK AFO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실시 지역

서울특별시 금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수공사 정액공사비와 정액금수공사 실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서울특별시 장엄보현

1. 실시 일시: 1985년 2월 일 승인 본부령 시행
2. 실시 지역 : 서울특별시 금수 가능 지역 전역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3. 대상 : 금수를 신청하는 건축물
4. 정액공사비 내용

구 분	정액공사비	
	포장도로굴착복구지역	비포장도로지역
연건축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00원
연건축면적 165㎡ 이상	1㎡ 당 1,800원	1㎡ 당 1,400원

-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과선도} 150% 이상 초과될 때에는 당시 금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초과 소요비용을 정액공사비에 가산정수함.
- 시설본담금은 별도로 가산됨.

5. 특 정 지 역

0. 급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를 수요가에서 특별히 부담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금로구 평창단지 및 주변표고 125m 이상지역

- 구로구 시흥동 3번지 법원단지 일대

0. 도면은 관할구청 수도공사과에 비치

6. 공사비 납부방법

0. 공사비는 급수신청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사 시행전에 납부하여야 함.

